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사례진술 :

원고는실업보험혜택에대한새로운클레임 (NIC)을유효하게제출했습니다. 그후,고용안전부(“Division”)는원고에게지불할주 간혜택이\$임을결정하고, 원고가설정한수혜기간동안원고에게지불할수있는실업보험혜택의최대금액은\$ 임을결정하였습니다.

이클레임은마지막취업에서의퇴직문제에대한판결에회부되었습니다.판결자는 N. C. Gen. Stat. § 96-14()에의거하여일,원고가혜택을받기에(실격이라는) (실격이아니라는)서류번호의판결자결정을내렸습니다. (원고) (고용주)는이결정에대한항소를제기하였으며,이문제는항소번호에따라항소심판에게제출 되었습니다.다음과같은개인들이청문회에서항소심판앞에출석하였습니다: 일,항소심판은 N.C. Gen. Stat. § 96-14.()에따라원고가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실격이 (아니)라는결정을내렸습니다.(원고) (고용주)가항소하였습니다.

발견한사실 :

1. 원고는부터까지의기간동안지속적인클레임을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본부와함께 일신청을했으며,본부에서요청한대로취업사무실에보고를계속하고,N.C. Gen. Stat. § 96-15(a)에따라혜택클레임을신청하였습니다.

2. 일부터원고는로서고용주를위해일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녀는)일고용주를위해마지막으로일하였습니다.



법의규정:

노스캐롤라이나주 고용안전법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개인의 고용상태지속이 해당 개인 또는 그 직계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이 직장을 떠나도 혜택을 받기에 실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은 가정폭력의 희생자입니다.

- a. 개인은 일반규정 50B 장 (Chapter)에 규정된 대로 불만을 가진 당사자로 판결되었다.
- b. 가정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증거가 있다. 가정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에 대한 증거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 1. 법집행기관, 법원, 또는 연방기관의 기록 또는 파일.
 - 2.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프로그램의 기록.
 - 3. 가정폭력, 성적학대, 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개인이 도움을 청한 종교적, 의학적, 또는 기타 전문가의 문서.
- c. 개인 또는 해당 개인과 함께 있는 또는 양육 중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해당 개인 또는 미성년자와 가족적 관계를 갖고 있는 또는 가졌던 다른 개인으로 인해 행해진 가정폭력의 결과로 해당 개인은 G.S. 15C-4 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참가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N.C. Gen. Stat. §96-14.8(2).

“직계가족”이란 생물학적, 양-, 이복-, 또는 법적관계임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및 조부모를 뜻합니다. N.C. Gen. Stat. §96-1(18).

실업보험급여에 대한 분쟁 클레임을 포함하는 경우 사실의 이슈를 전달할 때 평가위원회 (“Board”)는 증인의 신빙성 및 증언에 부여되는 무게의 궁극적 판사입니다. 위원회는 오로지 믿는 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증인의 증언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Moses v. Bartholomew, 238 N.C. 714, 78 S.E.2d 923 (1953); Phillips v. Kincaid Furniture Co., 67 N.C. App. 329, 313 S.E.2d 19 (1984).

법의결론:

현재의 경우, 청문회에서 제시된 적당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는 사실의 발견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가 해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적당하고 믿을 만한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가 N.C. Gen. Stat. § 96-14.8(2)의 의미 내에서 가정폭력의 사유로 직장을 떠났다고 결론 내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위원회는 항소심판의 결정이(확인되어야/ 뒤바뀌어야/수정되어야)하며, 원고는 혜택을 수령하기에(실격이)(실격이아니)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N.C. Gen. Stat. § 96-14.8(2)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혜택은 고용주의 계좌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결정:

항소심판의 결정은(확인되었습니다)(뒤바뀌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부터 실업보험 혜택에 대해 실격입니다.
(실격이 아니며부터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의의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여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 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팸플릿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팸플릿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5 페이지 중 4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고위 당국 결정 번호
 5 페이지 중 5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

